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90
----------	-------

발의연월일 : 2022. 1. 26.

발 의 자 : 이 영 · 김기현 · 김영식
김예지 · 김정재 · 송언석
유의동 · 조명희 · 최춘식
추경호 · 태영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에 한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방송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광고와 후보자 연설방송의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그 실효성이 낮고,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후보자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1명의 수어통역사만이 배치되어 후보자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광고와 방송에 대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하며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0조, 제72조, 제82조의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 중 “방영할 수 있다”를 “방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방영할 수 있다”를 “방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3인 이상의 후보자가 참석하는 대담·토론회에서 한국수어를 방영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제1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3인 이상의 후보자가 참석하는 대담·토론회에서 한국수어를 방영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생략) ⑥ 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에 있어서 聽覺障礙選舉人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을 <u>방영할 수 있다.</u> ⑦·⑧ (생략)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방영하여야 한다.</u> ⑦·⑧ (현행과 같음)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생략)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演說의 放送에 있어서는 聽覺障礙選舉人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u>방영할 수 있다.</u> <단서 신설> ③·④ (생략)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방영하여야 한다. 단, 3인 이상의 후보자가 참석하는 대담·토론회에서 한국수어를 방영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⑪ (생략)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